2025년 민간협력 여성벤처·스타트업 육성 『여성특화 창업기획자』모집 공고

초기 유망 여성 스타트업(창업 7년 미만)을 대상으로 여성 특화 액셀 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창업기획자(액셀러레이터)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> 2025년 2월 28일 한 국 여 성 벤 처 협 회 장

※ 본 모집공고는 창업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운영기관(창업기획자) 모집 공고문이며,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성벤처·스타트업 모집은 '25년 4월초 선정된 운영기관에서 별 도 공고(모집) 예정입니다.

모집 개요

□ 사업목적

 초기 유망 여성 스타트업(창업 7년 미만)을 집중 발굴・육성하는 창업기획자(액셀러레이터)를 양성하여 초기 여성 스타트업 성장지 원 기회 확대 및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

□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

- **사업규모** : 4개 운영기관(기관당 창업기업 7~9개사 이상 발굴·육성)
 - 비수도권 창업기획자 1개사 이상 선정 예정
- **사업예산** : 7억원(기관당 1.5억원~2억원 차등지원)
- **사업기간** : 협약일 ~ '25. 12. 31
- 지원내용 : 초기 여성 스타트업(7년 미만) 발굴·보육, 투자지원 등

□ 운영기관 역할

구분	주요내용			
직접(초기) 투자				
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모집·평가·선정	o 운영기관에서 보유한 자체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창업기업 선정 * 운영기관은 창의성과 시장 경쟁력이 반영된 혁신기술 기반 유 망 여성 스타트업 적극 발굴 노력 * 비수도권 지역 혁신기업 발굴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<u>비수도</u> 권 운영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내 본점 주소지가 비수도권 인(서울,경기,인천 제외) 창업기업에 한하여 선발(지원) 가능			
맞춤형 특화교육	o 운영기관의 역량을 투입하여 유망 여성 스타트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			
맞춤형 멘토링 및 보육	o (멘토링) 창업기업의 업종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멘토링 운영 o (보 육) 운영기관이 자체 보유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창업기업을 위한 공간(입주, 협업, 강의장) 등 지원 * 시설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기관은 타 기관과 협력 가능	정부지 원금 +		
사업화 자금지원	 총액의 40% 이상을 창업기업 당 최소 9백만원~최대 1천만 원 사업화자금(현금) 배정 및 지원·관리 필수 * 창업기업의 제품(서비스) 개발 및 고도화, 마케팅, 지재권 등에 활용되는 사업화자금 집행 및 관리 * 운영기관 자체평가를 통해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가능 	· 대응 자금 (현금)		
후속투자	ㅇ 데모데이 개최 등 후속 투자유치 연계 지원			
네트워크	o 창업기업의 국·내외 시장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자, 고객, 파트너사, 졸업기업, 스타트업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지원			
사후관리	o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 유치, 상호협력 등 후속지원 o 대중매체 등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사업 및 창업기업 홍보			
성과관리	o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(매출액, 고용, 투자유치, 지식 재산권 확보 등) * 성공사례 발굴 및 관리			

^{*} 위의 지원내용 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(맟춤형 교육 및 멘토링, 보육 등)은 운영 기관 강점 및 특화역량, 유관기관 협업 네크워크 등 창업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안 및 운영 가능

신청자격 및 요건

□ 신청자격

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액셀러 레이터로서 아래의 인력 및 조직 구성 등을 갖추어야 함

구분	주요내용
	ㅇ 1기수 이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 자
총괄책임자	ㅇ 창업 및 액셀러레이팅 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
	* 벤처기업 창업자로서 해외시장 진출 IPO, M&A 등의 경험 보유자 우대
참여인력	ㅇ 총괄책임자(겸직가능) 외 1명 이상의 전담인력
검색한탁	* 전담인력 중 창업(지원)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를 1명 이상 구성
멘토단 확보	o 현장·실무경험을 보유한 성공 창업자, 투자자, 기술·경영 분야 전문가 등
맨도딘 폭모	* 전문분야 멘토 확보 및 기업이 추가적인 멘토를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확보
협력체계	o 투자·멘토링·네트워킹 지원이 가능한 국·내외 액셀러레이터, 벤처캐피탈·
	엔젤투자자·벤처기업 창업자 등과 상시 협력체계 보유

□ 신청요건

- **매칭투자자금(자체재원) 구성** : 운영기관은 자체재원을 마련하여 당해 년도 창업기업 협약기간(~'25.11.30) 내 창업기업 3개사 이상 직접투자
 - * 내·외부 투자금 등 투입 시, 확약서를 미제출하거나 <u>본 사업 투입</u>을 목적으로 한 다는 내용(투자 기업수, 투자금액 등) 명시가 안 될 경우 불인정
 - 운영기관이 협력기관과 **건소시엄을 구성**하여 **전용 투자재원을 운용**하는 경우 인정
- ※ 운영기관은 사업제안 시 협약기간 내 직접투자 기업수 및 투자액 등을 제안 서에 제시해야 하며, 미이행시 정부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 될 수 있음
- ※ 직접(초기) 투자금을 미투자 또는 투자된 초기창업기업이 액셀러레이팅 중도포기 시 해당 금액분은 환수하며 총투자액으로는 불인정함(협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재투자해야 함)
- ※ 기타 의무사항 미준수 등 사유 발생 시 정부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 될 수 있음
- **대응자금 투입** : 정부지원금의 10% 이상을 대응자금으로 투입하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조직 운영에 사용 가능
 - * 여성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투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확약서 등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
 - ** 대응지금 확보 예정인 경우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미확보시 운영기관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음
- **현물지원** : 입주 공간, S/W, H/W 등

□ 신청 제외 대상

- 신청기관(또는 대표자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①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
- ②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
- ③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
- ④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
- ⑤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「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
- ⑥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경우
-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⑧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제13조 제4항 등을 준용하여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지원내용 및 사업비 구성

□ 지원내용

3

○ 창업기업 선정·관리,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기관 운영비 등 사업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

□ 사업비 구성(안)

구 분	세부 내용	비율
인건비	전담인력 인건비 및 겸직인력 수당	총 사업비의 40% 이하
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화 자금지원	창업기업 모집·선정,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(교육·멘토링·네트워킹 등) 운영 선정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(현금) 지원 (기업당 최소 900만원 ~ 최대 1천만원)	총 사업비의 60% 이상
사업운영비	일반수용비(소모품비, 홍보비, 회계감사비, 기타 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부대 비용), 공공요금 및 제세, 특근매식비, 국내·외 여비, 기관업무비(총액의 2% 이하)	-

- * 사업기간 종료 후 회계법인을 통해 전체 사업비(운영기관+창업기업) 정산
- ** 인건비 책정시 본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필수 인력으로 구성하여 제시해야 하며,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하여 예산을 편성(선정 평가시 인건비 비중 이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사업제한 등 제재사항이 될 수 있음)

4 신청·접수

□ 신청기간: 2025. 2. 28(금) ~ 3. 17(월)까지

□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○ **신청방법** : 담당자 이메일(sjheo@kovwa.or.kr) 제출

○ 제출서류

제출기한	제출서류	제출방식	
	① 제출공문(기관대표자 명의, 자유양식)		
	② 사업계획서		
3.17(월) 까지	③ 기타증빙서류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 등록증, 지방세·국 세·4대보험 완납 증명서, 투자실적증명서, 개인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등) 각 1부	이메일 (sjheo@kovwa.or.kr)	
	④ 발표자료(PDF) * 영상, 사운드 재생 불가 ** 발표 10분, 질의응답 15분 (예정)		

* 파일명 : (기관명)_여성특화 액셀러레이터_(제출서류명칭)

** 폴더명 : (기관명)_여성특화 액셀러레이터

○ 문 의 처 : 기업지원본부 sjheo@kovwa.or.kr / 02-3440-7469

5 평가 및 선정

□ 평가방법 및 절차

< 운영기관 선정평가 운영 절차 >

모집·신청		선정평가		결과통보
이메일 제출 (~'25.3.17)	2	발표평가 ('25.3.19~20)	>	개별통보 ('25.3.24)

* 상황에 따라 선정평가 운영절차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- **평가일정** : '25. 3. 19(수) 20(목) 진행예정
 - * 신청기관별 평가일정 및 시간은 향후 별도 안내 예정이며, 평가장소는 한국여성 벤처협회(서울 강남구 역삼) 인근 평가장에 진행
- **평가방식** : 신청기관당 25분(발표 10분 + 질의 15분) 대면 발표평가 실시
 - * 발표자는 반드시 신청기관 대표자 혹은 총괄책임자만 가능하며, 평가장 내 배석 인원은 발표자 포함 최대 2명으로 제한
- o 평가위원 : 외부 전문가 5명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
- o 평가항목 : 기관역량 및 사업수행 등 세부항목 평가

구 분	평가항목				
	o 기관역량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				
기관역량	o 추진실적 및 투자성과(투자금액, 후속투자연계율 등)				
	o 대내·외 협력체계 구축 현황				
사업수행 역량	ㅇ홍보 및 스타트업 선발, 프로그램 구성계획,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등(사업화지원, 역량강화교육, 멘토 링, 데모데이, 네트워크, 사후관리 등)	30			
투자계획	투자계획 ㅇ 운영기관 직접(초기) 및 후속투자 계획				
성과관리	성과관리 이 성과목표 및 관리 계획, 성과달성 방안 등(직접투자 / 후속투자, 사업홍보, MCU, 지원기업 고용 창출 / 매출액 증가 등				
소 계					
o 직접투자 자체재원 조성(3점) * 2억원 1점, 2.5억원 2점, 3억원 이상 3점 가 점 o 대응자금(현금) 20% 이상 조성(2점) o 신청기관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(1점)		6			
합 계					

- * 신청시 가점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가점으로 불인정
- ** 평가위원 최고값, 최저값을 제외한 산술평균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*** 선정기관의 중도협약포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점수 고득점 기관 순서대로 선정
- **** 평가점수가 70점 이하인 경우 선정하지 않으며, 선정기관의 정보보안 및 형평성 등으로 인해 선정결과는 공개하지 않음(개별 안내 예정)
- **발표자료** :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PDF로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된 발표자료는 수정 불가(영상, 사운드 재생 불가)
 - * 발표자료 작성 시, 보유 인프라 현황 확인을 위해 관련 사진 등을 상세하게 첨부 요망(선정기업 중 필요시 현장실사 예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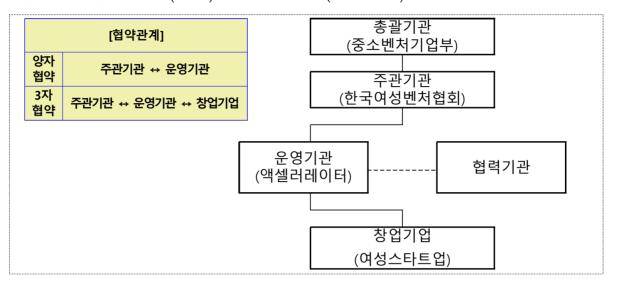
◈ 본 사업에 신청하는 자(기업)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

- ① 본 사업은 "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"이 적용되며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<u>10년 이하의 징역</u>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-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<u>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</u>이 부과될 수 있으며,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명단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.
- ③ 중소벤처기업부는 "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" 제32조에 따라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.
- ③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등 관계법령 관련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신청 및 선정 후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기업 및 신청기관에게 있음
- 사업계획서 제출 등 신청절차 및 서류 제출은 정해진 신청·접수 기한('25.3.17(월))까지 완료되어야 함
- 최종 선정기업은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정한 기한 내에 대응자금 (현금)을 지정계좌에 입금해야하며, 비목 내 대응자금이 책정되어 있을 경우 대응자금 선 집행 후 정부지원금 집행이 가능함
- 최종 선정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,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요청하는
 자료제출과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
- 최종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년도 다음 해부터 4년간 창업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
- 동 사업에 선정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,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사업 신청은 기관의 대표자*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
 - * 운영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신청기관의 장(컨소시엄의 장은 신청 불가)

- 선정 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
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하지 아니할 수 있음
 - 투자재원 등 자금 확보 등의 신청요건은 협약시작일 이후 1개월 이내 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함
 - * 의무사항 이행내용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협약체결 시 제출
 - **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중도 해약 가능
-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, 기타 사안(전년도 확약사항 미이행 등)으로 개최된 사업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른 제재조치 등 발생 시 중도 해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함
 - 중도 해약 발생시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운영기관 선정
- 신청(운영)기관은 타 기관과 협업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, 협약은 주관기관(협회)와 신청(운영)기관(1개 기관) 간 진행
 - * 모든 사업비(대응자금 포함)는 신청(운영)기관에서 관리·집행하여야 함
 - ** 협업기관은 단독으로 운영기관 기능을 수행하거나 "본 사업"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
- 협약기간 내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주관기관은 사업운영위 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불인정(환수) 판정을 내릴 수 있음
- 사업 선정 후,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- 신청 서류의 구비가 미비한 경우 신청·접수를 받지 않으며,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7 기타사항

○ **협약체결** : 운영기관은 사업 운영 시, 타 기관 협업할 수 있으나 협약은 주관기관(협회)과 운영기관(1개 기관)이 진행



- 이행준수 : 협약 후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해지될 수 있음

< 협약사항 (운영기관 역할) >

- ① 여성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대상 선정(자체 기준으로 평가 진행)
- ② 최종 선정된 기업의 사업단계에 맞춘 세부달성 목표 설정 및 전략수립
- ③ 기업의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
- ④ 기업에 직접 또는 후속투자 지원
- ⑤ 기업의 과제 수행 완료 후 후속관리
- 현장실사 : 선정기관은 협약 전 사업수행 준비, 사업수행 가능여부 판
 단, 민간부담금 산정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현장실사 추진
 - * 제출된 계획서와 현물 내용 등이 상이할 경우 협약 체결 취소 가능
- **성과평가** : 매년 사업성과 평가 실시(일자리 창출실적 등)
-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, 항목별 배점은 별도 평가계획 수립·시행
- **최종결과보고** : 본 사업으로 추진된 내용* 일체에 대한 증빙 등 제출 필수
 - * 스타트업 선발, 투자지원, 프로그램 세부진행, 액셀러레이터 역량 강화 등

○ 자료제출 의무 : 선정 액셀러레이터, 스타트업은 수행 과정 중 성과 및 기업 성장추이 파악 등 모니터링을 위한 수시(정기·비정기) 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, 사업 완료 후 4년간 통합성과관리를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 협조의 의무가 있음

8 추진일정

공모신청·접수		선정평가		협약체결	
한국여성벤처협회(홈페이지)		주관기관		주관기관↔운영기관	
2.28(금)-3.17(월)		3.19(수)-20(목)		3.26(수)-27(목)	
				O	
최종점검(성과평가)		사업운영		창업기업 선정	
운영기관 및 창업기업		주관기관 및 운영기관		운영기관이 선정한 후 주관기관에 사후보고	
′26.1		 협약일-12.31(일)		 4월중	

*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(변경 시 별도 안내)